

의안번호	2212093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08.26.
추계번호	25G434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소득세,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,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2026년 3조 439억원, 2029년 6,637억원 등 2026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 총 11조 5,270억원(연평균 2조 8,81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,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72조)	-	-3,620	-3,738	-3,859	-11,217	-3,739
조합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8조의5)	-282	-507	-507	-225	-1,521	-380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2,553	-17,235	-4,309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)	-26,933	-28,374	-29,894	-	-85,201	-28,400
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(안 제106조제2항제9호)	-32	-32	-32	-	-95	-32
합계	-30,439	-38,278	-39,916	-6,637	-115,270	-28,81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-
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울과세 등)	○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울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－
4	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	○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－
5	안 제106조제2항제9호 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○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·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울과세 등)	○	
4	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	○	
5	안 제106조제2항제9호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
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 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 - 향후 과세표준 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3년 신고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 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를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인의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이전 감면실적을 현행 세율에 맞춰서 조정하여 활용
 - ※ 단, 2023년 조합법인의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 -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2020~2024년)간의 실적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 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29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 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

-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29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□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실적 및 어업용 기자재 실적을 구분하고, 각각의 최근(2019~2023년) 추세를 반영해 향후 조세지출액을 추정
 -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(징수 기준)은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, 세부 항목을 각각 구분할 수 없음
 -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(신고 기준)는 최종 조세지출액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나,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조세지출액에 반영함

□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최근 조세지출액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

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
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9~1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2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업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 +손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항목 ¹⁾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9% ²⁾	9%
	2~20억원	19% ²⁾	
	20~200억원		12%
	200~3,000억원	21% ²⁾	
	3,000억원 초과	24% ²⁾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%p씩 상향된 세율 적용

□ (특례실적)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,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,11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,289억원 수준

-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3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과세특례 실적	3,271	3,347	4,230	5,113	3,28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□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 효과 추정

○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억원)	
합 계	4,215	59,145	-	6,053	-	11,167	-5,113
2억원 이하	1,181	618	9	56	10	62	-6
2~20억원	2,273	19,307		1,740	20	3,407	-1,666
20~200억원	753	37,307	12	4,032		7,311	-3,279
200~3,000억원	8	1,913		225	22	387	-162

주: 1)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, 중간
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
실적을 조정

-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
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5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4,215	59,145	-	-	-	11,167	-	-	10,577
2억원 이하	1,181	618	0.5	10	0.05	62	9	0.04	56
2~20억원	2,273	19,307	8.5	20	1.6	3,407	19	1.5	3,215
20~200억원	753	37,307	49.5		10.5	7,311		10.0	6,938
200~3,000억원	8	1,913	239.1	22	55.0	387	21	52.3	36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3년 기준 11.5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6]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 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 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-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-D)	
산출세액	6,053	11,167	-5,113	10,577	-4,524	-11.5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 실적은 연평균 3.2% 증가함

[표 7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 (잠정)	연평균 증가율 ('20~'24년)
특례 실적	조정 전(A)	3,271	3,347	4,230	5,113	3,289	-
	조정 후 (A×[1-11.5%])	2,894	2,961	3,743	4,524	3,289 ¹⁾	3.2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8]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세수효과	-3,620	-3,738	-3,859

(3) 추계결과

□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

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3,620억원, 2029년 3,85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조 1,217억원(연평균 3,7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72조)	-3,620	-3,738	-3,859	-11,217	-3,739

나.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709억원 등 2020~2024년 연평균 634억원(9.6% ↑) 수준

[표 10]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 ¹⁾	2년 평균 ²⁾	5년 평균 ³⁾
조세감면액	492	491	611	868	709	789	634
(증감률)	(△37.2)	(△0.2)	(24.4)	(42.1)	(△18.3)		(9.6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3~2024년 평균

3) 2020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789억원)을 기준으로 함

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28년 9%p, 2029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29년은 5%, 2030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11]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
현행(A)	5	9	9	9	9
개정안(B)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4	0

- 2023년~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(789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29년 4년간 총 1,521억원(연평균 380억원)으로 예상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82	-507	-507	-225	-1,521	-380

다.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조 1,647억원 등 2020~2024년 연평균 5,725(27.8% ↑) 수준

[표 13]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¹⁾	2년 평균 ²⁾	5년 평균 ³⁾
조세감면액	4,372	3,269	3,113	6,226	11,647	8,937	5,725
(증감률)	(△13.9)	(△25.2)	(△4.8)	(100.0)	(87.1)		(27.8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3~2024년 평균

3) 2020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8,937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 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28년 9%p, 2029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29년은 5%, 2030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14]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
현행(A)	5	9	9	9	9
개정안(B)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4	0

- 2023년~2024년 이자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8,937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83억원 (8,937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 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29년 4년간 총 1조 7,235억원(연평균 4,309억원)으로 예상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2,553	-17,235	-4,309

라.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동 제도는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
 - 적용대상은 비료¹⁾, 농약²⁾, 경운기·트랙터·콤바인 등 농업기계, 양돈케이

지·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,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, 어망·선박
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,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³⁾ 등임

□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
전체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8,770억원, 2023년 2조 3,047억원 등
으로 집계

○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
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

[표 16]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:
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조세지출액	18,770	17,763	18,481	21,886	23,047

주: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(2) 추계방법

□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, 최근 농·축
산·임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2023년의 경우 96.4%, 어업용 기자재
분의 비율은 3.3% 수준으로 집계

[표 17]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기자재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: 2019~2023년

(단위: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
농·축산·임업용(제105조제1항제5호)	95.8	95.8	96.0	95.8	96.4
어업용(제105조제1항제6호)	4.2	4.0	4.2	3.6	3.3

주: 공급가액은 신고(귀속) 기준 금액이며,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

2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르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

3)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
별표에 따른 농업기계, 축산기계, 어업용기자재,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임

- 영세율 대상인 기자재 공급가액 자료를 반영하여, 전체 조세지출액을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로 구분함
- 매년 전체 조세지출액(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)에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

[표 18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
어업용 기자재	794	715	784	794	772

-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30년 3조 2,418억원 등으로 추정
-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7,976억원에서 2023년 2조 2,275억원으로 2019~2023년 5년간 연평균 5.5%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19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감률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	5.5

-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(연평균 5.5%)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

[표 20]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	23,502	24,796	26,162	27,602	29,122

□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5년 772억원 등으로 추정

- 최근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21년 784억원, 2022년 794억원, 2023년 772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

[표 21] 최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
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조세지출액
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	794	715	784	794	772	772

- 최근(2019~2023년) 조세지출액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,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평균과 동일한 수준(연간 772억원)일 것으로 추정

[표 22]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:
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
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	772	772	772	772	772

(3) 추계결과

□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조 6,933억원, 2028년 2조 9,894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8조 5,201억원(연평균 2조 8,40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2026~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6조 3,645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조 1,556억원 감소 예상

[표 23]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
2026~2028년,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)	-26,933	-28,374	-29,894	-85,201	-28,400
- 국세(74.7%)	-20,119	-21,195	-22,331	-63,645	-21,215
- 지방소비세(25.3%)	-6,814	-7,179	-7,563	-21,556	-7,185

마.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- 동 제도는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
- 동 제도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액은 2019년 36억원, 2022년 46억원, 2024년(전망) 29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, 최근(2019~2024년)의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32억원 수준

[표 24]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:
2019~2024년(전망)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(전망)	연평균
조세지출액	36	21	34	46	24	29	32
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32억원 등 2026~2028년 3년 간 총 95억원(연평균 3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(2019~2024년)의 연평균 조세지출액(32억원)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
 - 2026~2028년 3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71억원, 지

방소비세(25.3%)는 총 24억원 감소 예상

[표 25]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28년,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6조제2항제9호)	-32	-32	-32	-95	-32
－ 국세(74.7%)	-24	-24	-24	-71	-24
－ 지방소비세(25.3%)	-8	-8	-8	-24	-8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